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청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전체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 고려)로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1 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 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2. (생략)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u>1</u> 이 <u>상</u> ④ (생략)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 <u>2</u> 이 <u>상</u>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연 락 처	(044) 200 - 1984